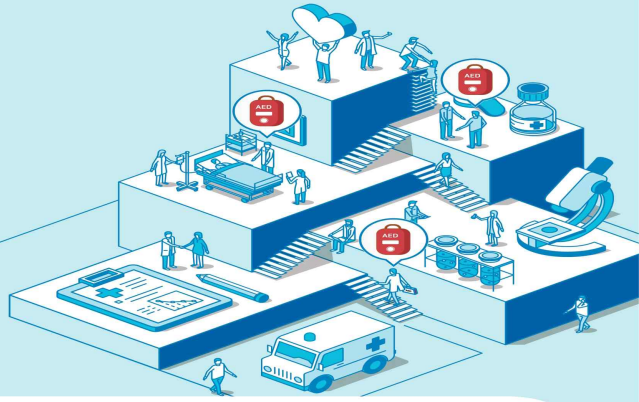


AED



01

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월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관할 기관에 통보

- 대상**
- ① 공공보건의료기관 ② 119구급차 ③ 여객항공기 및 공항 ④ 철도차량 승객차 ⑤ 20톤 이상의 선박 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⑦ 철도역사 대합실 ⑧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⑨ 항만 대합실 ⑩ 카지노 ⑪ 경마장 ⑫ 경주장 ⑬ 고도소 및 소년원 등 ⑭ 5,000석이상 종합운동장 ⑮ 중앙행정기관(부·차·청) ⑯ 사·도청사
- (단, 대상시설 규모는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 참조)

02

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이수

- 대상**
- ① 구급차등의 운전자 ②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④ 보건교사 ⑤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⑥ 산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 ⑦ 체육시설의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⑧ 유선 및 도선 인명구조요원 ⑨ 관광사업종사자(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, 철도종사자, 선원) 중 의료·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⑩ 소방안전관리자 ⑪ 체육지도사 ⑫ 유치원 교사 ⑬ 보육교사
- (이무교육 대상은 응급의료법 제47조제1항 참조)

6월 22일부터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시행

점·검·방·법



홈페이지 사용방법

● 점검이력 등록하기

- 01 [통합응급의료정보] 홈페이지(<http://portal.nemc.or.kr>)
- 02 자동심장충격기(AED)관리 클릭 후 로그인
- 0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(AED) 목록 확인 후 AED 장비 선택
- 04 상단메뉴 '장비정보' → '장비점검등록' → '점검일지등록'
- 05 또는 상단메뉴 '점검이력' → '점검일지등록' 클릭



● 사용일지 작성하기

- 01 [통합응급의료정보] 홈페이지(<http://portal.nemc.or.kr>)
- 02 자동심장충격기(AED)관리 클릭 후 로그인
- 0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(AED) 목록 확인 후 AED 장비 선택
- 04 상단메뉴 '사용이력' → '사용일지등록'
- 05 사용정보, 이송정보, 환자정보 *필수사항 입력 후 저장



모바일 APP 사용방법

● 점검이력 등록하기

- 01 [응급의료정보제공] 앱 설치 후 초기화면 클릭
- 02 업무포탈(의료인): AED관리, 구급차, 교육로그인 클릭
- 03 상단메뉴바 AED관리에서 로그인 후 AED장비 선택
- 04 상단메뉴 '장비정보' → '장비점검등록' → '점검일지등록'
- 05 또는 상단메뉴 '점검이력' → '점검일지등록' 클릭



● 사용일지 작성하기

- 01 [응급의료정보제공] 앱 설치 후 초기화면 클릭
- 02 업무포탈(의료인): AED관리, 구급차, 교육로그인 클릭
- 03 상단메뉴바 AED관리에서 로그인 후 AED장비 선택
- 04 상단메뉴 '사용이력' → '사용일지등록'
- 05 사용정보, 이송정보, 환자정보 *필수사항 입력 후 저장



※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 이용 점검 등록시 별도 통보 절차 없이 관할 시·군·구에 통보됨

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

- 1 아이디 : 점검을 하고자 하는 설치기관 관리번호(설치기관의 고유번호로 설치기관 내 모든 장비 점검이력 관리 가능) 혹은 장비연번(AED고유번호로 해당 장비의 점검이력만 관리 가능) 입력
 - 2 비밀번호 : 설치기관 정보입력 시 설정한 비밀번호로 동일
- ※ 관리번호, 장비연번, 비밀번호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



서면 신고방법

● 서식 다운로드

<http://www.e-gen.or.kr> 접속 ▶ 공지사항 ▶ 'AED' 검색
※ 서면 통보방법은 관할 보건소 문의(Fax, 전자우편 등)



● QR코드 활용방법

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및
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
다운로드

